

2025년 원산지관리사 개정사항표

24년도 합격예감 문제집 소지자분께서는 25년도 시험대비 시 아래 개정사항표 참고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일자 : 2024년 9월 27일]

1과목		
페이지	2024년도 합격예감 문제집	2025년도 개정사항 및 문제집 반영
61p	인증서 교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교부하고, 증명서발 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내용 수정] 20일 -> 30일
61p	유효기간 : 5년	[내용 수정] 5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61p	유효기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 되는 날부터	[내용 수정] 30일 -> 1년
63p	(1) 의의 ③ ㉔ 그 밖에 중소기업 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내용 수정] 중소기업이 -> 하기 (2)에 다른 지원 대상자가
106p	2. 보정이자의 징수 면제 ①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내용 ① 하위 추가] 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㉖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6p	02. 보정이자(법 제35조의2)	[내용 하위 4. 추가] 4. 보정이자율 상기 1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보정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연 1천분의 35)

2과목		
페이지	2024년도 합격예감 문제집	2025년도 개정사항 및 문제집 반영
173p	★ 핵심체크 1. 제17류에서 포함되는 당류와 제외되는 당류 2. 천연꿀과 인조꿀의 분류	[내용 핵심체크 추가] 1. 제17류에서 포함되는 당류와 제외되는 당류 2. 천연꿀과 인조꿀의 분류 3. 백색초콜릿의 분류

3과목		
페이지	2024년도 합격예감 문제집	2025년도 개정사항 및 문제집 반영
299p	04. 운송요건 (1) 직접운송원칙	[(2) 직접운송요건 유형 하위 내용 추가] (2) 직접운송요건의 유형 1) 유럽형 ① 직접운송요건을 FTA 협정에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비체약국을 경유할 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② 싱가포르·EFTA·EU·영국·터키·아세안·인도·페루·콜롬비아·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RCEP·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 2) 미주형 ① 직접운송요건을 FTA에 두지 않고,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② 칠레, 미국, 캐나다와의 FTA (3) 직접운송요건 확인 1)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①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다. ② 운송서류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단순경유 사실 입증 원산지증명서 등 2)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경유국에서 어떠한 가공도 없었다는 것을 서류에 의하여 수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만일 비체약국 경유 사실 입증서류 요건이 협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내법에서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규정된다.

306p	(3) 완전생산기준 적용범위 1) 협정상 완전생산품의 범위 2) 완전생산기준 예시	[(1) 일반적 범위 하위 내용 추가] 1) 일반적 범위 ① 완전생산품은 광산물·농수산물 등 천연산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산품은 다국적으로 분업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되는 경우가 적다. ② 농수산물도 재배·사육·양식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품이 될 수 없다. 예) A국에서 송아지 출생 ⇨ B국에서 사육 ⇨ C국에서 도축(완전생산품으로 인정 안됨) ③ 공산품의 경우 재료 조달 및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분업화로 인하여 완전생산품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많이 있다. ㉠ 역내에서 출생해서 사육된 양의 털로 만든 직물 ㉡ 역내에서 출생해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우유로 제조된 치즈 2) 협정상 완전생산품의 범위 3) 완전생산기준 예시
-------------	--	--

4과목		
페이지	2024년도 합격예감 문제집	2025년도 개정사항 및 문제집 반영
406p	08. 장부 등의 보관 2.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 및 보관 (1) 의의	[2번 하위 내용 추가] 2.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 및 보관 (1) 의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존 기준) 상기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①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②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406p	08. 장부 등의 보관 3.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작성 및 보관 (1) 의의	[3번 하위 내용 추가] 3.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작성 및 보관 (1) 의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보관 예외 서류) 상기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②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20p	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일 것 :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출판매에 대한 정의는 없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㉕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㉖ 무상으로 임차하는 물품 ㉗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㉘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자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㉙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㉚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㉛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내용 수정] 물품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㉕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㉖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㉗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㉘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자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㉙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㉚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㉛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33p	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내용 수정]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443p	(7) 관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이율(연 1천분의 29)	[내용 수정] 29 -> 35
467p	4. 통관보류 ㉔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 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내용 수정] -> ㉔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㉔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 사를 받는 경우 ㉔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 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88p	(5)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청장은~정한다.	[내용 삭제 및 수정] ① 의의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손실보상의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검사 대상 물품 ㉡ ㉠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③ 손실보상의 금액 :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상기 ㉠의 ㉠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기 ㉠의 ㉡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